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재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322

발의연월일: 2025. 3. 25.

발 의 자:김재원·김준혁·정춘생

김선민 · 신장식 · 강경숙

민형배 • 전재수 • 한창민

임오경 · 서영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시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도서구입 및 신문 구독료, 공연관람료, 박물관·미술관·영화상영관 입장료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공제받을 수 있음.

한편, 2024년에 고궁과 왕릉의 전체 관람객 수는 1,578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으며, 고궁과 왕릉에서 진행된 프로그램(이하 "궁능 활용 프로그램"이라 함)에도 689만명이 참여하였음.

궁능 활용 프로그램은 6,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될 정도로 그 파급효과가 큼에도 고궁과 왕릉 관람료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고 있음.

이에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고궁과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100분의 30을 소득공제해 국민 누구

나 부담없이 문화 유산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획를 확대하는 것임(안 제 126조의2제2항제3호라목). 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2항제3호 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궁 또는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(이하 이 목에서 "궁·능시설이용분"이라 한다). 이경우 궁·능시설이용분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궁·능시설이용분에 관한 적용례)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 법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제2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궁 또는 왕릉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0617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제126조의2(신용카드 등 사용금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생 액에 대한 소득공제) ① (현행 략) 과 같음)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(2) ----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(해당 과세연도의 총급 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제1호·제2호·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)에 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과 제7호의 금액(2024년 과세연도 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더한 금액으로 하되,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.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 1호,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.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1. • 2. (생 략)

3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(이하 이 항에서 "문화체육사용분"이라 한다) × 100분의 3 0(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문화체육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40)

가. ~ 다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4. ~ 7. (생 략) ③ ~ ⑨ (생 략)

| 3 |
|-----------------------|
| |
| |
| |
| |
| |
| |
|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 |
| 라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 |
| 궁 또는 왕릉 등을 관람하 |
| 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(이 |
| <u>하 이 목에서 "궁·능시설</u> |
| 이용분"이라 한다). 이 경 |
| 우 궁・능시설이용분의 구 |
| 체적인 범위 등에 관하여 |
|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|
| <u>로 정한다.</u> |

4. ~ 7. (현행과 같음)

③ ~ ⑩ (현행과 같음)